

의안번호	2126495
의 퇴 인	박진 의원
회 답 일	2024. 2. 16.
추 계 번호	24A0145
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자본금)	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자본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자본금 증액(안 제4조)

-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할 경우 재정 소요 발생 가능
 - 2024년 2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납입자본금 14.8조원 중 정부 납입액은 10.8조원으로 총 납입자본금의 73.0%에 해당

[표 1] 한국수출입은행 납입자본금 및 비중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납입자본금 총액	출자기관별 납입액		
		정부	한국산업은행	한국은행
출자액	147,733	107,878	28,205	11,650
비중	100.0%	73.0%	19.1%	7.9%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(2024.2.14. 기준)

[표 2]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변동내역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법정자본금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
납입자본금	118,711	124,495	127,483	127,733	147,733
－ 정부출자금	78,857	84,640	87,628	87,878	107,878
한도소진율	79%	83%	85%	85%	98%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

- 다만, 「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」은 정부출자의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¹⁾, 정부의 ‘2024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계획’ 및 ‘향후 자본금 증액시 출자계획’ 등도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[참고] 최근 10년(2013~2023년)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내역

(단위: 억원)

연도	정부출자			산업은행 · 한국은행 ¹⁾	현물출자내용
	현금	현물	소계		
2013년	1,000	－	1,000	－	
2014년	1,300	3,800	5,100	－	한국토지주택공사 3,800억원
2015년	1,300	10,000	11,300	－	한국토지주택공사 1조원
2016년	10,200	－	10,200	5,000	KAI 5,000억원(산은)
2017년	－	2,500	2,500	11,669	인천·여수광양항만공사 각 1,250억원 (한국선박해양 출자) KAI 1조 1,669억원(산은)
2019년	562	－	562	－	
2020년	5,783	－	5,783	－	
2021년	2,988	－	2,988	－	
2022년	250	－	250	－	
2023년	－	20,000	20,000	－	한국토지주택공사 2조원
합계	23,383	36,300	59,683	16,669	

주 1) 한국은행은 2001년 이후 출자 내역 없음

자료: 기획재정부

1) 「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」 제1조(출자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.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